##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34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유동수・복기왕・정진욱

문대림 · 김남희 · 박상혁

김교흥 • 허종식 • 정일영

박 정・위성락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정책금융"이라 한다)의 총액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정책금융공급총액은 2013년 770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921조1,100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등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정책금융공급총액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금융의 공급을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반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금융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 등) ①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정책금융"이라 한다)를 합산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정책금융공급총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금융공급총액의 공급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초과된 정책금융공급총액의 규모와 그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 공급액 현황, 공급한 정책금융의 연체 및 손실 처리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금융공급총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선 생 <신 설>	제39조의3(금융공공기관의 건전 성 관리 등) ①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정책금융"이라 한다)를 합산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정책금융공급총액"이라 한다)이 전년도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정책금융공급총액의 공급 제한을 완화할 수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초과된 정책

금융공급총액의 규모와 그 이 유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 기관의 장은 정책금융 공급액 현황, 공급한 정책금융의 연체 및 손실 처리 현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소관 상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금융공급총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